

#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

## 1 기본 현황

### 사업개요

회 계	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100세대 규모이상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및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(3%)을 구청장에게 지급		
사업비 (당해년도)	797,736천원	(국비)	(시비)797,736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###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주택건축본부	공동주택과	박순규 2133-7130	안남선 2133-7132	이규동 2133-7133

\*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0	(x-) 797,736	(x-) 797,736	(x-) 0
징수교부금	(x-) 0	(x-) 797,736	(x-) 797,736	(x-) 0

###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	
징수교부금	○ 징수교부금	=	797,736천원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
	26,591,168,470원*3%

### 3 사업 설명

#### □ 사업목적

-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하여 100세대 규모이상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 및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(3%)을 구청장에게 지급

#### 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 :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
-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
- 부과대상 : 100세대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개발사업시행자
- 부과기준 : 단독주택용지-분양가의 14/1000, 공동주택-분양가의 8/1000
- 집행방법 : 자치구의 징수실적에 의거 징수교부금(징수금 3%) 지급

#### 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8.1월 ~ 2018.12월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
- 사업내용 :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3%를 자치구청장에게 교부
- '20년도 소요예산 : 797,736천원

#### □ 추진경위

- 2018.1~12월 기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수납
- 2018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결산

#### □ 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797,736	
자치구 세입계좌 파악	2020.02~2020.02		
학교용지부담금 입금조치	2020.03~2020.03	797,736	자치구 입금조치

## **4** 사 업 효 과

###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: 710,855천원
2018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: 1,044,435천원
2019년도	○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 : 636,503천원

### 향후 기대효과

- 자치구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욕 고취시켜 건설하고 안정적인 세입확보